

【축산정책】

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(오리분야)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

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
- 모돈 번식전문 농장을 설치·운영하여 건강한 자돈 공급 및 산업의 분업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

2. 근거법령

-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(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),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2017년까지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젖소 축종의 축사 총 5,150개소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

구분	성과지표	2010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 산출 시기	측정방식
			2007	2008	2009		
오리	연간 회전율	5.8	5.6	5.7	5.7	매년 1월 중	연간 출하횟수 (오리협회 조사)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단위 : 백만원

구 분	2007년	2008년	2009년	2010년	2010년이후
【오리】	-	-	3,528	2,561	32,383
- 보조	-	-	1,058	768	9,716
- 융 자	-	-	1,764	1,281	16,191
- 자부담	-	-	706	512	6,476

II.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①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, 계열화 사업참여농가

및 전업농

※전업농 기준 : 오리 5,000수 이상

※「브랜드경영체」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브랜드경영체 운영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영체를 말함

※가축계열화 업체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(농림부 고시)에 의해 시·도지사가 지정한 계열화업체임

※가축계열화사업으로 개보수를 지원받는 농가는 동 사업대상에 제외

※종돈장·종계장·종오리장은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2006.1.1 이후 축산업(소 사육업, 양돈업, 양계업, 오리사육업, 낙농업)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

외(축산업 등록제 기준). 다만,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,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
3. 지원대상

- 사업내용 :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

※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

※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 건축을 말함

- 오리 : 축사(무창 또는 개방) 및 내부기자재(급 이 · 급수 · 환기 시설(공기정화기 등), 온 · 습도 조절장치, 계란 세척기 등), 계란 냉장보관창고, 폐사축 처리시설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오리 축사 및 사육시설

5. 지원형태 및 사업량

- 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
- 보조 30%, 융자 50%(연리 3%, 3년거치 7년상환), 자담 20%

※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

- 사업기간 : 2년차 사업(1년차 50%, 2년차 50% 분 할 지원)

【2010년도 예산안 내용】

단위 : 백만원

구분	사업량 (개소)	사업비 합계	사업비				
			예산액	계 (100%)	보조 (30%)	융자 (50%)	지방비 (-) (20%)
오리	5	2,561	2,049	768	1,281	-	512

주) 예산액은 1년차에 지원사업비의 50%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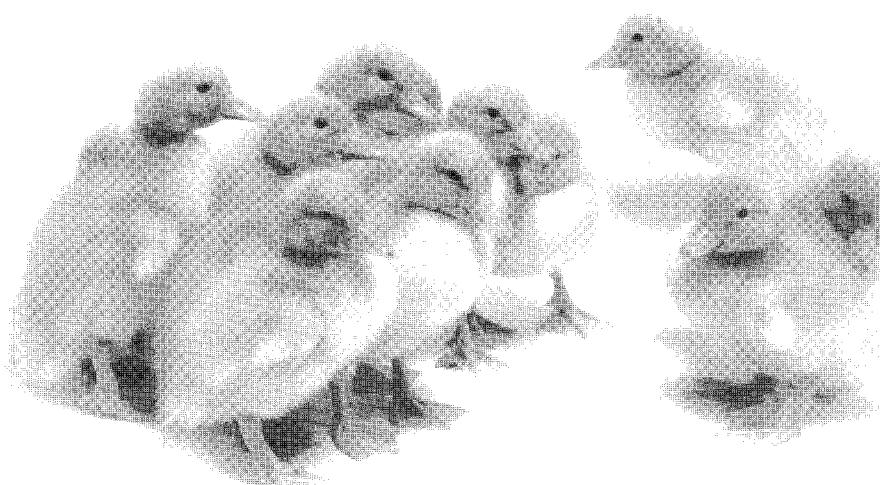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구분	사육시설 면적당(㎡) 지원한도액	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	개소당 사업비	
			지원한도액	총사업비
오리	304천원/㎡	20백만원	700백만원	875백만원

주) 지원한도액은 보조+융자의 합산액이며, 총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

III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- 사업총괄기관 : 농림수산식품부(축산경영과)
- 사업주관기관 : 시 · 도지사
- FTA기금관리기관 : 농수산물유통공사(FTA기금팀)
- 대출취급기관 : 농협중앙회



별 표**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선정기준표(오리)**

□ 시·도(시·군)명 :

□ 사업신청자명 :

평가항목	세부기준	배점	득점	비고
① 평시 사육수수 (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0,000수이상 • 20,000수이상~30,000수미만 • 10,000수이상~20,000수미만 • 5,000수이상~10,000수미만 	50 40 30 20		※증빙서류 제출 (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) ※계열화 직영 신청 경우 현 직영 농장 사육수수만 해당
② 추진가능성 (4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부지가 확보되고,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•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,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•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,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•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않고,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	40 30 20 0		※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 동의서,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제출
③ 교육실적 (5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축산관련 학교(농고, 전문대학, 대학(원)) 졸업자(또는 수료자)인 경우 • 20일이상~30일미만 • 10일이상~20일미만 • 5일이상~10일미만 • 1일이상~5일미만 	50 40 30 20 10		※교육기관 또는 오리협회 본부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, 축 산환경, 질병, 방역, 경영 등 사 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 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 본 제출(이수 수료증 등) ※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
④ HACCP, 컨설팅 여부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HACCP 지정 • HACCP 지정 신청 • HACCP 컨설팅을 받은 경우 	20 10 5		※HACCP지정 및 신청은 (사)축 산물 HACCP 기준원에 한함 ※지정서, 신청서, 계약서 등 증 빙서류 제출
⑤ 가축공체 가입여부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축공체 가입증인 경우 • 미가입 	20 0		※가입증명서 사본 제출
⑥ 수상경력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(시·군·구, 시·도, 농림수산식품부 등) 또는 오리협회 본부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기축생산과 관련된 표창, 포상 등을 받은 경우 	중앙부서 20 시·도 15 시·군·구 10 협회·농협 8		※수상관련서류사본 제출 ※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, 포 상 등을 제외 ※계열화 직영의 경우 법인 또는 임직원에 한함
계(200)				

주) 관련증빙서류 첨부, 미첨부사는 0점처리

<가점> : 자조금 납입농가의 경우 가점(인센티브) 부여

평가항목	세부기준	배점	득점	비고
자조금 납입여부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조금 납입 • 납입기간은 2009.1~2009.12월 	20		※자조금 납입증명서 제출(오리자 조금관리위원장 발행)

□ 총 득점 : _____ 점

서식 1

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

- 농가 작성용 -

1. 사업자 현황	대표자명 (법인명)		연락처	자 택 : 휴대전화 :								
	집 주소											
	농장명		연락처									
	농장 주소											
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												
※한(육)우, 돼지에 한해 작성	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		계약일시	년 월 일 ~ 현재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축 종 : 한(육)우, 양돈, 양계(종계, 산란, 육계), (종)오리, 낙농(젖소)로 구분 사육형태 : 일관(), 비육(), 번식(), 기타() - 해당란에 ○ 표시 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총 사육두수</th> <th>번식(모돈, 번식우, 척유 등)</th> <th>육성축</th> <th>자 축</th> </tr> <tr> <td>두(수)</td> <td>두(수)</td> <td>두(수)</td> <td>두(수)</td> </tr> </table>					총 사육두수	번식(모돈, 번식우, 척유 등)	육성축	자 축	두(수)	두(수)	두(수)	두(수)
총 사육두수	번식(모돈, 번식우, 척유 등)	육성축	자 축									
두(수)	두(수)	두(수)	두(수)									
2. 경영현황	주)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											
<연도별 출하실적>: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2006</th> <th>2007</th> <th>2008</th> <th>2009.11월까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두(수)</td> <td>두(수)</td> <td>두(수)</td> <td>두(수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2006	2007	2008	2009.11월까지	두(수)	두(수)	두(수)	두(수)
2006	2007	2008	2009.11월까지									
두(수)	두(수)	두(수)	두(수)									
사업구분 : 신축(), 개축(), 개보수() - 해당란에 ○ 표시												
사업계획 농장 주소 :												
3. 사업계획	신청 사업비 : 뒷면에 기재											
<p>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: 뒷면에 기재 *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된 면적(m²) 범위내에서만 지원함</p>												
첨부서류 : ① 축산업등록증 ②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③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④ 신용조사서 ⑤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에 한함)												
상기와 같이 2010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			
신청인 : (인)												
○○○ 광역시장(지사) 귀하												

〈신청 사업비〉

구분	세부계획	사업비											
		2009				2010				계			
		보조	융자	자담	계	보조	융자	자담	계	보조	융자	자담	계
축사													
	소계												
내부시설 및 기자재													
	소계												
	합 계												

주) 2년차로 사업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

〈현재 축산업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〉

현 행 면 적	공사계획면적	사업완료후 전체 면적	
		m ²	m ²

주) 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면적(m²) 범위내에서만 지원됨으로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이 현행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됨

〈지원한도액 확인〉

정부지원 신청액(보조+융자)	천원
면적당 신청액 = (보조+융자) / 공사계획면적(m ²)	천원/m ²

주)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(m²)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

서식 2

()분기 추진실적(완료) 보고

□ 사업개요

- 사업자 성명(사업기관 명) :
- 주소 :

□ 추진(완료)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업자명	사업계획	사업량			사업비								B/A
						계획				실적				
			계획	실적	%	계(A)	보조	용자	지방	자담	계(B)	보조	용자	지방
		○축사시설												
		:												
		○퇴비사												
		:												
		○관리사												
		:												
		○전기시설												
		:												
		○용수시설												
		:												
		소 계												

※사업자의 실제 집행액(대출액) 기준으로 작성

□ 기타

- 사업완료시 건축물·시설 사진, 건축물 준공허가서류, 등기서류,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